#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4

발의연월일: 2022. 10. 14.

발 의 자:김회재・송재호・오기형

주철현 • 이병훈 • 김성주

이해식 · 임호선 · 김승남

박광온 · 서범수 · 서동용

윤건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 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 둔 기존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지사를 지방에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를 신설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 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 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이 조 및 제63조의2"를 "이 조, 제63조의 2 및 제63조의3"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
서 "지사"라 한다)를 신설하여 2027년 12월 31일(지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지사의 부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설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하 이 조에서 "지사신설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
득(신설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

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나. 지사를 수도권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것
- 다. 수도권 밖에 신설한 지사(이하 이 조에서 "신설지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신설지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신설지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가. 지사 신설일 이후 지사신설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사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 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지사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 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지사를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를 수도권 밖에 신설하여 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신설지사의 근무인원이 본사의 근무인원과 신설지사 근무인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지사신설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신설지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⑤ 공장을 이전하면서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근무인원·기간의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 유)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3) ----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 년 12월 31일-----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 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 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 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 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 나. (생략)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 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 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u>이 조 및</u>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 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 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 할 것
  - 2) (생 략)
- 2. (생략)
-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제6

1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
A) 7 7)C
<u>이 조, 제6</u>
<u>3조의2 및 제63조의3</u>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 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 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 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생 략)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2027년 12월 31일
<u>2027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20201 1.00 21
<u>2030년 12월 31</u> 일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신 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지점 또는 사 무소(이하 이 조에서 "지사"라 한다)를 신설하여 2027년 12월 31일(지사를 신축하는 경우로 서 지사의 부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7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설계 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 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 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사신설법인"이라 한다)은 제 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신설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 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 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

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둔 법인일 것
  - 나. 지사를 수도권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설할 것
  - 다. 수도권 밖에 신설한 지사 (이하 이 조에서 "신설지 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금액 및 신설지사의 근무 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 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 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신설지 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 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지사 신설일 이후 지사신설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지사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는 지사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 1. 지사를 신설하여 사업을 개 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 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를 수도권 밖에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신설지사의 근무인원이 본사의 근무인원과 신설지사 근무인원이 함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지사 신설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신설지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⑤ 공장을 이전하면서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 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 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

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근무인원· 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